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41

발의연월일: 2020. 11. 17.

발 의 자:이소영·주철현·김경만

이광재 · 김민철 · 윤준병

민형배 · 조오섭 · 홍정민

한병도 • 박영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 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은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심판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현행 제도는 미비한 수준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소송 전 분쟁의 조기 해결이가능하고 침해소송이 결부된 경우에는 소송까지 종결할 수 있으나, 현재는 '심판-조정 연계제도' 없이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새로운 분쟁해결 수단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해당

심판 합의체가 조정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5444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 442호)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심판-조정 연계 특례) ①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 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및 「상표법」 제151 조의2에 따라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 양 당사자는 각자 심판-조정 연계신청서를 조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3항을 준용하되, 같은 조 제3항의 "조정신청이 있는 날"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일원이 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신 설> 제49조의3(심판-조정 연계 특례) ①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및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양 당사자는 각자 심판-조정 연계신청서를 조정부에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조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3항을 준용하되, 같은 조 제3항의 "조정신청이 있는 날"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익위이 되 	현 행	개 정 안
「실용신안법」제33조,「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및 「상표법」제151조의2에 따라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 양 당사자는 각자 심판-조정 연계신청서를 조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3항을 준용하되,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하되, 같은 조 제3항의 "조정신청이 있는 날"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 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	<u><신 설></u>	제49조의3(심판-조정 연계 특례)
인보호법」 제152조의2 및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에 대 해서 양 당사자는 각자 심판- 조정 연계신청서를 조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제43조 제3항을 준용하되, 같은 조 제3 항의 "조정신청이 있는 날"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사건 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 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		① 「특허법」 제164조의2,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 양 당사자는 각자 심판-조정 연계신청서를 조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제43조 제3항을 준용하되, 같은 조 제3항의 "조정신청이 있는 날"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 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 양 당사자는 각자 심판-조정 연계신청서를 조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제43조 제3항을 준용하되, 같은 조 제3항의 "조정신청이 있는 날"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 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		인보호법」 제152조의2 및
해서 양 당사자는 각자 심판- 조정 연계신청서를 조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제43조 제3항을 준용하되, 같은 조 제3 항의 "조정신청이 있는 날"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사건 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 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조정 연계신청서를 조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제43조 제3항을 준용하되, 같은 조 제3항의 "조정신청이 있는 날"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 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에 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제43조 제3항을 준용하되, 같은 조 제3 항의 "조정신청이 있는 날"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사건 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 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		해서 양 당사자는 각자 심판-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제43조 제3항을 준용하되, 같은 조 제3 항의 "조정신청이 있는 날"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사건 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 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		조정 연계신청서를 조정부에
제3항을 준용하되, 같은 조 제3 항의 "조정신청이 있는 날"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사건 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 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
항의 "조정신청이 있는 날"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사건 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 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제43조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 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		제3항을 준용하되, 같은 조 제3
②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사건 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 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		항의 "조정신청이 있는 날"은
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 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 본다.
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 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		②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사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 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		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
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		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
에 따르 조젓부의 익워이 된		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
		에 따른 조정부의 일원이 될
<u>수 있다.</u>		<u>수 있다.</u>